

# 전자어음거래약관 변경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변 경( 안)	비 고
제 1 조(목적) ~ 제 28 조(전자어음 결제) (생 략)	제 1 조(목적) ~ 제 28 조(전자어음 결제) (좌 동)	
제 29 조(만기전 지급제시) ①(생 략) ②제 1 항의 요청은 소지인 거래은행에 서면으로 <u>신청하며, 신청일로부터</u> <u>2 영업일 이후의 지급제시일을 지정하여</u> <u>신청하여야 한다. 지급제시일을</u> <u>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</u> <u>정할 수 있다.</u>  (신 설)	제 29 조(만기전 지급제시) ①(좌 동) ②제 1 항의 요청은 소지인 거래은행에 서면으로 <u>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</u> <u>발행인의 당좌거래정지에 따른 요청의</u> <u>경우에는 소지인 거래은행 또는</u> <u>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</u> <u>있다.</u>  ③지급제시일은 <u>신청일후</u> <u>제 2 영업일부터 지정할 수 있으며,</u> <u>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</u> <u>지정할 수 있다.</u>	- 문구 수정 ( 신청방법 추가 및 항분리)  - 항 신설
제 30 조(부도) ~ 제 44 조(재판관할 및 준거법)(생 략)	제 30 조(부도) ~ 제 44 조(재판관할 및 준거법)(좌 동)	
(붙임)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생 략)	(붙임)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좌 동)	